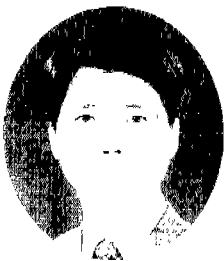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합의 하더라도 형사문제는 남게 된다



박종복/변호사

<질문>

1년전 갑에게 돈 1,000만원을 월 2부이자로 빌려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갑은 그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이 많아서 본인에게 빌린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는 것이다. 본인은 갑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원금 1,000만원만 되돌려 받기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 그런데 며칠전 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 이미 합의가 되었는데 왜 다시 나오라는 것인가.

<답변>

개인간의 금전대여관계에 대한 다툼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는 갑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송을 내어 승소를 한뒤 갑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아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많이 소요된다. 더욱,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갑이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어 손에 쥐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민사재판은 그 본질상 법원이 갑에게 돈 얼마를 언제까지 갚으라고 판결을 내리고, 갚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뿐이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갑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형사적인 재재를 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갑에게 형사책임을 들을 수 있다면 사정이 다르다. 즉, 갑이 귀하로부터 돈 1,000만원을 빌려더라도 이것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빚독촉에 못이겨 귀하에게 돈을 곧 갚아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귀하를 속이고 돈 1,0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입증된다면, 갑은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민사문제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발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귀하의 경우에도 우여곡절 끝에 원만히 합의되었다면 다행이다.

다만,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귀하와 갑 사이의 민사문제가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도 형사문제는 계속하여 남는다. 즉 수사기관은 갑이 정말로 귀하의 돈을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갑을 처벌하거나 무혐의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귀하와 같이 서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수사결과 갑의 죄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때 정상참작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귀하가 갑과 이미 합의하여 돈을 받았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일방적으로 갑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오히려 귀하가 무고죄의 죄책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하가 그 동안의 과정을 진실대로 진술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하튼 민사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일 것이다.